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683
----------	-------

발의연월일 : 2026. 3. 23

발 의 자 : 임미애·김한규·윤준병
전진숙·이소영·김남희
이원택·이기현·이연희
안태준·신장식·전종덕
이수진·박홍근·최혁진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
기관을 설치할 수 있음.

그런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57개의 성교육 전문기관이 실
제로는 모두 “청소년성문화센터”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교육
뿐만 아니라 성상담, 성문화체험관 운영 등 아동·청소년의 성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실제
운영상황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국의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통합관리하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성상담 등의 지원서비스가 체계적·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맡을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이 밖에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하여 정부가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필요도 있음.

이에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명칭과 업무내용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중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등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7조의4, 제56조 및 제5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47조의2”를 각각 “제47조의3”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청소년성문화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를 “성평등 의식의 제고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성문화센터(이하 “청소년성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련 사항, 성교육 전문기관”을 “그 밖에 청소년성문화센터”로 한다.

② 청소년성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성상담 프로그램 운영
2. 아동·청소년의 성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 운영
3. 아동·청소년을 위한 성문화체험관 설치·운영
4. 아동·청소년 성교육·성상담 전문가 양성

5.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성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성평등 의식 제고 및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의2를 제47조의3으로 하고,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청소년성문화센터 중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국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성상담 등의 지원 서비스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성문화센터 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국의 청소년성문화센터에 대한 통합관리 및 지원
2. 아동·청소년의 성문화에 대한 인식과 아동·청소년 성교육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3. 아동·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 및 성교육 기법의 개발·보급
4.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의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5. 그 밖에 아동·청소년 성교육·성상담 등 지원서비스 관리 및 아동·청소년의 성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중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 자격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4(보수교육)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청소년 성문화센터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과 보수교육 실시의 기간·방법 및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제1항제9호의2 중 “성교육 전문기관”을 “청소년성문화센터”로 한다.

제57조제3항제5호의2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청소년성문화센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

행 당시 종전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은 이 법 제4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성문화센터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제공하는 교육·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의 참여

제47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 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47조(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운영) ① -----

---성평등 의식의 제고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성문화센터(이하 “청소년성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청소년성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성상담 프로그램 운영
2. 아동·청소년의 성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 운영
3. 아동·청소년을 위한 성문화 체험관 설치·운영
4. 아동·청소년 성교육·성상담 전문가 양성
5.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성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성평등 의식 제고 및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련 사항,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 및 설치 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운영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청소년성문화센터-----

-----.

제47조의2(청소년성문화센터 중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국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성상담 등의 지원서비스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성문화센터 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국의 청소년성문화센터에 대한 통합관리 및 지원
2. 아동·청소년의 성문화에 대한 인식과 아동·청소년 성교육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3. 아동·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 및 성교육 기법의 개발·보급

4.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의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5. 그 밖에 아동·청소년 성교육·성상담 등 지원서비스 관리 및 아동·청소년의 성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중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 자격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생략)

<신 설>

제47조의3(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현행 제47조의2와 같음)

제47조의4(보수교육)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과 보수교육 실시의 기간·방법 및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

